

과태료의 부과기준(제18조제1항 관련)

위 반 행 위	해당 법조문	과태료 금액
1. 법 제17조제2항(법 제19조의3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하여 주차장에 대한 일반의 이용을 거절한 자	법 제30조제2항 제2호	50만원
2. 법 제19조의10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필증 또는 기계식주차장의 사용을 금지하는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	법 제30조제2항 제5호	50만원
3. 법 제19조의17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	법 제30조제2항 제5호의2	50만원
4.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·기피 또는 방해한 자	법 제30조제2항 제6호	50만원